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

(전문개정 2007. 3. 13. 지침 제329호)
(개정 2007. 5. 23. 지침 제335호)
(개정 2007. 8. 31. 지침 제339호)
(개정 2007. 9. 28. 지침 제343호)
(개정 2008. 1. 14.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시행규정)
(개정 2008. 1. 14. 지침 제350호)
(개정 2008. 2. 4. 지침 제353호)
(개정 2008. 2. 28. 지침 제358호)
(개정 2008. 7. 2. 지침 제362호)
(개정 2008. 7. 28. 지침 제369호)
(개정 2008. 10. 8. 지침 제375호)
(개정 2008 .12. 5. 지침 제380호)
(개정 2008. 12. 24.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개정 2009. 1. 30. 지침 제388호)
(개정 2009. 7. 13.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시행규정)
(개정 2009. 9. 29. 지침 제402호)
(개정 2010. 4. 16. 지침 제410호)
(개정 2010. 5. 19. 지침 제414호)
(개정 2010. 6. 29. 법률구조사건처리시행규정)
(개정 2010. 6. 30. 지침 제 418호)
(개정 2011. 2. 28. 지침 제 431호)
(개정 2011. 12. 28. 직제규칙)
(개정 2012. 4. 6. 지침 제451호)
(개정 2012. 5. 24. 지침 제453호)
(개정 2012. 7. 13. 지침 제459호)
(개정 2012. 12. 10. 지침 제464호)
(개정 2013. 1. 22. 지침 제468호)
(개정 2013. 6. 24. 지침 제478호)
(개정 2013. 9. 1. 기록물관리규칙)
(개정 2013. 9. 17. 지침 제481호)
(개정 2013. 12. 31.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개정 2014. 2. 26. 지침 제 488호)
(개정 2014. 3. 28.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개정 2014. 3. 31. 지침 제490호)
(개정 2014. 5. 29. 지침 제495호)
(개정 2014. 6. 10. 지침 제497호)
(개정 2014. 11. 26.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개정 2014. 11. 28. 지침 제515호)
(개정 2014. 12. 31. 지침 제516호)
(개정 2015. 2. 24. 지침 제520호)
(개정 2015. 3. 27. 지침 제522호)
(개정 2015. 4. 13. 지침 제 524호)
(개정 2015. 9. 23. 지침 제530호)
(개정 2015. 10. 30. 지침 제 533호)
(개정 2015. 12. 30. 지침 제537호)
(개정 2016. 1. 22. 지침 제545호)
(개정 2016. 2. 2. 지침 제547호)
(개정 2016. 3. 30. 지침 제550호)
(개정 2016. 4. 29. 지침 제556호)
(개정 2016. 5. 19. 지침 제558호)
(개정 2016. 6. 1. 지침 제560호)
(개정 2016. 6. 16.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시행규정)
(개정 2016. 7. 28. 지침 제563호)

(개정2016. 9. 26. 지침 제564호)
(개정 2016. 12. 29. 지침 제571호)
(개정 2017. 3. 30. 지침 제581호)
(개정 2017. 6. 7. 지침 제585호)
(개정 2017. 7. 11. 지침 제587호)
(개정 2017. 12. 13. 지침 제593호)
(개정 2018. 4. 4. 지침 제600호)
(개정 2018. 5. 11. 지침 제603호)
(개정 2018. 6. 22. 지침 제604호)
(개정 2018. 8. 28. 지침 제608호)
(전부개정 2018. 12. 28. 지침 제613호)
(개정 2019. 7. 1. 지침 제642호)
(개정 2019. 9. 2. 지침 제646호)
(개정 2020. 1. 22. 지침 제655호)
(개정 2020. 7. 31. 지침 제675호)
(개정 2020. 8. 21. 지침 제676호)
(개정 2020. 9. 16. 지침 제678호)
(개정 2021. 1. 13. 지침 제683호)
(개정 2021. 3. 5. 지침 제689호)
(개정 2021. 5. 4. 지침 제696호)
(개정 2021. 11. 25. 지침 제714호)
(개정 2022. 3. 31. 지침 제722호)
(개정 2022. 7. 7. 지침 제727호)
(개정 2022. 9. 6. 지침 제728호)
(개정 2022. 9. 7. 지침 제729호)
(개정 2022. 9. 27. 지침 제730호)
(개정 2022. 12. 29. 지침 제736호)
(개정 2023. 5. 8. 지침 제747호)
(개정 2023. 5. 22. 지침 제749호)
(개정 2023. 6. 26. 지침 제751호)
(개정 2023. 6. 30. 지침 제752호)
(개정 2023. 11. 14. 지침 제764호)
(개정 2024. 3. 7. 지침 제775호)
(개정 2024. 5. 20. 지침 제789호)
(개정 2024. 7. 8. 지침 제810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단의 무료법률구조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출연기관) ①이 지침에서 “무료법률구조사업”이라 함은 제2항 각호의 출연기관이 출연한 적립금을 재원으로 출연목적에 따라 법률구조대상자 중 일정한 자에게 무료로 법률구조를 해주는 사업과 국가의 지원이 있는 경우 그 지원금으로 법률구조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1. 14.> <개정 2008. 7. 2.> <개정 2008. 7. 28.> <개정 2010. 5. 19.> <개정

2011. 2. 28.> <개정 2012. 4. 6.> <개정 2012. 5. 24.> <개정 2013. 1. 22.> <개정 2014. 2. 26.> <개정 2014. 3. 31.> <개정 2014. 5. 29.> <개정 2014. 12. 31.> <개정 2015. 3. 27.> <개정 2015. 10. 30.> <개정 2015. 12. 30.> <개정 2016. 3. 30.> <개정 2017. 6. 7.> <개정 2017. 12. 11.> <개정 2018. 5. 11.> <개정 2018. 12. 28.>

②공단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출연기관은 아래 각호와 같다. <신설 2018. 12. 28.><개정 2020. 1. 22.><개정 2020. 7. 31.><개정 2020. 8. 21.><개정 2021. 5. 4.><개정 2021. 11. 25.><개정 2022. 9. 27.><개정 2023. 5. 8.><개정 2023. 5. 22.><개정 2023. 11. 14.><개정 2024. 5. 20.>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주식회사 신한은행
4.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5. 여성가족부
6. 양육비이행관리원
7. 고용노동부
8. 중소벤처기업부
9.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10. 대법원(사법서비스진흥기금)
11. 국가보훈처
12.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13. 주식회사 국민은행
1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5.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16. KDB산업은행

17. 법무부
18. 보건복지부
19.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20. 재단법인 에스티엑스복지재단
21. GS칼텍스 주식회사
22. 장기소액연체자지원 재단법인
23. 금융위원회
2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7. 주식회사 코빗
28. 하나금융나눔재단
29.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30. 화물복지재단

제3조(구조대상자) ①이 지침에 의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5%(농·어업인은 150%) 이하인 자 중 [별표 1]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본문의 소득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개정 2016. 7. 7.> <개정 2018. 4. 4.> <개정 2018. 12. 28.> <개정 2019. 7. 1.> <개정 2020. 1. 22.><개정 2020. 8. 21.><개정 2021. 5. 4.>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2. 선원법상의 임금·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3. 연 매출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4. 채무자대리인 선임사건(과태료제재 사건 포함)을 신청하는 채무

자와 관계인<개정 2024. 7. 8.>

5.「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피해자 및 그 유족

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신설 2024. 7. 8.>

②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대상자별 정의는 [별표 1] 무료법률구조대상자 '대상자 정의' 난에서 정한 바와 같다. <신설 2018. 12. 28.>

제4조(구조대상사건) 이 지침에 의한 무료법률구조대상사건은 민사·가사사건,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구조대상자 중 구조대상사건의 제한이 있는 경우는 [별표 1] 무료법률구조대상자 '구조대상사건' 난에서 정한 바와 같다. <개정 2013. 12. 31.> <개정 2014. 6. 19.> <개정 2018. 12. 28.> <개정 2020. 1. 22.>

제5조(무료법률구조대상자 증빙서류) 무료법률구조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5%(농·어업인은 150%) 이하인 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서류(제3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제외)와 [별표 1] 무료법률구조대상자 '증빙서류' 난에서 정한 대상자별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전부개정 '18. 12. 28.> <개정 2019. 7. 1.> <개정 2020. 1. 22.><개정 2020. 8. 21.>

1. 세대주와 세대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등본(국내 거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을 소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건강보험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중 택일)

제6조(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①[별표 1] 무료법률구조대상자 '가족에 대한 무료' 난에 '해당'으로 기재된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배우자, 미성년 직계비속,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직계존속 및 성년의 직계비속은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한다. 다만, 성년의 직계비속이 학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때에는 동일 세대로 본다. <개정 2008. 12. 5.> <개정 2013. 9. 17.> <개정 2015. 12. 30.> <개정 2016. 3. 30.> <개정 2017. 3. 30.> <개정 2018. 12. 28.>

②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가족이 별도의 소득이 없으나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만한 충분한 자력이 있는 경우에는 무료법률구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구조의 제한) ①무료법률구조대상자는 본안사건을 기준으로 연 3건에 한하여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동일 청구사건은 상고심까지 1건으로 본다.

②무료법률구조대상자가 1·2심사건의 무료법률구조(일부무료 포함)를 받았으나 각 패소한 경우(일부패소 포함) 상고심에 대해서는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수임변호사가 구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고심도 무료로 구조할 수 있다.

제8조(사건접수 및 처리의 특례) ①무료법률구조대상자 상호간의 사건의 경우 사건조사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청취하고 화해를 유도할 수 있고,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특히 의뢰자 및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등을 교량하여 의뢰자의 사건을 소송구조함이 법률구조제도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2.>

②농·어민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

다)에 법률구조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조합을 통하여 법률구조신청을 하는 경우 조합직원은 농·어민을 대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법률구조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③조사자는 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대리접수한 조합직원을 통하여 증거자료의 수집 등을 할 수 있다.

④대리접수한 사건의 경우 사건처리와 관련한 각종 통지는 본인에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접수한 조합직원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⑤「가정폭력피해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상담소 또는 시설, 여성가족부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 가정폭력피해여성보호를 위해 설치된 상담소 또는 시설 등에서 발급한(가정폭력·성폭력)피해상담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해당 여성단체에서 소송결과의 통지를 요구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진술서를 의뢰자로부터 받은 후 유선 및 기타 방법으로 소송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제9조(법률구조계약) ①소송구조결정된 사건의 법률구조계약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무료법률구조계약서에 의하여 본인과 직접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직원이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조합직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법률구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개정 2016. 12. 29.> <개정 2018. 4. 4.>

②법률구조위원이 수임변호사인 사건의 법률구조계약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체결한다. <개정 2015. 9. 23.> <개정 2018. 4. 4.>

③체불임금 및 퇴직금 무료법률구조사건으로서 소장등서류작성 구조결정된 사건의 법률구조계약은 별지 제8호서식의 무료법률구조계약서에 의하여 체결하여야 하고, 법률구조계약 체결과 동시에 의뢰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4.> <신설 2020. 1. 22.>

④채무자대리인 선임사건(관계인 지원 포함) 및 과태료제재 신청사건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신청서를 법률구조계약서에 갈음하고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2.><개정 2024. 7. 8.>

제10조(소송비용의 상환 등) ①무료법률구조대상자 중 [별표 1] 무료법률구조대상자 '무료 범위' 난에 '전부무료'로 기재된 경우에는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은 무료법률구조적립금특별회계의 적립금 부담으로 하고, [별표 1] 무료법률구조대상자 '무료 범위' 난에 '일부무료'로 기재된 경우에는 변호사보수는 무료법률구조적립금특별회계의 적립금 부담으로 하고 소송비용은 의뢰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 9. 23.> <개정 2015. 12. 30.> <개정 2018. 12. 2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상위계층, 집단피해자(공익소송), 플랫폼종사자(이하 '차상위계층등'이라 한다)의 소송비용은 「법률구조 사건처리규칙 시행규정」제28조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상환결정서에 갈음하여 별지 제 18호 서식의 소송비용계산서에 의하여 산정하고 지원금의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17. 12. 13.> <개정 2018. 12. 28.> <개정 2022. 3. 31.>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승소가액이 3억을 초과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9.> <개정 2017. 12. 13.><개정 2021. 5. 4.>

1.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2.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단, 개인기준 승소가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가액에 해당하는 인지대 및 변호사 보수는 의뢰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법원소송구조결정을 받은 피구조자가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할 때에는 공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에 대하여 제1항,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7. 12. 13.>

⑤지부, 법문화교육센터, 출장소 및 지소(이하 “지부 등”이라 한다.)에서는 무료법률구조적립금에서 부담하는 소송비용에 대한 상환결정내역을「무료법률구조적립금 운용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3.> <개정 2011. 12. 28.> <개정 2017. 12. 13.>

제11조(소송비용의 상대방상환) ①지부 등에서는 소송비용이 일반회계로 세입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소송비용을 상환받은 것으로 회계처리 함과 동시에 패소자인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소송비용에 대한 변제최고를 하되, 소송구조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인 소송비용에 대한 변제최고서에 의하고, 소장등서류작성구조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인 소송비용에 대한 변제최고서에 의한다. 다만, 본문에도 불구하고 차상위계층등에 대하여는 제10조제2항에 의한 소송비용계산서에 따라 산정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 대한 상환결정금액으로 하며, 판결 등의 확정시에 상대방에 대한 변제최고를 한다. <개정 2010. 6. 29.> <개정 2017. 6. 7.><단서신설 ’17. 12. 13.> <개정 2018. 12. 28.> <개정 2018. 12. 28.><개정 2022. 3. 31.>

②변제최고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임의로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절차에 의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소송구조는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상환하고, 소장등서류작성구조는 별지 제12호서식인 채권양도통지서와 별지 제13호서식인 소송비용에 대한 변제최고서에 의한 최고 등의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9.>

③제2항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사건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률

구조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회계의 민사소송비용과목에서 지출하며 채권양도통지비용은 일반회계의 수용비에서 지출한다. 다만, 소송비용상환결정시 변호사보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2조(소송비용 상대방상환금 및 법원회수금의 회계처리 등) ①소송비용 상대방상환금이란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상환한 금원(법원의 집행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은 상대방 상환금으로 본다)을 말하며, 법원회수금이란 공탁금이나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한 후 소송절차나 집행절차 등에서 사용되지 않고 잔액으로 되돌려 받는 송달료, 신체감정료, 검증료, 집행비용 잔액의 환급금 등을 말한다. <개정 2010. 6. 29.> <개정 2016. 5. 19.> <개정 2016. 12. 29.> <개정 2018. 12. 28.>

②제11조에 따른 소송비용 상대방상환금은 일반회계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출연기관 및 대상자의 상대방상환금은 아래 각호에서 정한 금액에 한하여 법률구조적립금특별회계에 편입한다. <개정 2018. 12. 28.>

1. <삭제 2022. 7. 7.>
2. 고용노동부가 출연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 상환금액의 1/2
3.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출연한 선원: 상환금액 중 선박감수보존비용 전부 <신설 2018. 12. 28.>

③법원회수금은 법률구조적립금특별회계에 편입한다. <개정 2018. 12. 28.>

④지부 등의 소송비용상환담당부서에서는 상대방상환 및 법원회수현황을 월별로 집계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의 소송비용상대방상환 및 법원회수현황보고서에 의하여 익월 10일까지 본부 회계담당부서로 보고하여야 하며, 본부 회계담당부서에서는 그 결과를 익월 15일

까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9.> <개정 2017. 12. 13.> <개정 2018. 12. 28.>

제13조(소송비용 상대방상환불가결정) ①「법률구조 사건처리규칙 시행규정」제28조제1항에 의한 소송비용상환결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제10조제2항에 의한 소송비용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별지 제15-1호 서식에 의하여 소송비용상환결정과 동시에 상대방상환불가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29.> <개정 2017. 12. 13.>

1. 패소한 사건
2.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건
3. 상대방의 임의변제 또는 항소부제기 등을 조건으로 하여 상대방과 소송비용을 받지 않기로 한 사건
4. 의뢰자의 사정으로 소 취하 합의한 사건
5. 상대방이 없는 사건
6. 공시송달로 판결이 난 사건
7. 판결문에 상대방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사건
8. 기타 소송비용 상대방상환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사건 . <개정 2010. 6. 29.>

②무료법률구조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결정서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상환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건은 별지 제16-1호 서식의 결정서에 의하여 일괄결재로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상환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7. 2.>. <개정 2010. 6. 29.>

1. 소송비용미상환금액이 200,000원 이하인 사건. <개정 2010. 6. 29.> <개정 2016. 9. 26.>
2.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는 사건

3. 상대방 재산 없음이 확인된 사건

4. 기타 소송비용의 상대방상환 및 법원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개정 2010. 6. 29.>

제14조(채무자대리인 선임사건 특칙) ①채무자대리인 선임사건(관계인 지원 포함) 및 과태료제재 사건에서 지출되는 우편요금 등 비용은 소송비용 처리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4. 7. 8.>

②채무자대리인 선임사건(관계인 지원 포함) 및 과태료제재 사건에 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4. 7. 8.>

[본조신설 2020. 1. 22.]

제15조(가정폭력 피해자등에 대한 피해자변호사건의 특례) 가정폭력 피해자·성폭력피해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이버성폭력피해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피해자,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가정폭력 피해자등'이라고 한다.)를 위한 피해자변호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고소대리 사건이 종료하는 때에는 최종 종료된 사건에서만 형사소송비용으로 100만원을 징수결정한다.

[본조신설 2022. 3. 31.]

제16조(가정폭력 피해자등에 대한 법률구조비용 승인) ①가정폭력 피해자등 사건(보전사건 제외)의 1인당 법률구조비용 총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소제기시 또는 소송 진행 중 청구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가액이 600만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지부장 등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법률구조 비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비용심사회'라 한다)에 법률구조비용 초과지출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률구조비용 초과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본부 구조국에 비용심사회를 둔다.

③비용심사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은 구조국장으로 하고, 출연기관 담당부서(과)의 장을 상임위원으로 하며, 외부 전문 변호사와 가정폭력 피해자등 지원기관의 대표자 중 이사장이 위촉하는 2명을 위원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제1항의 법률구조비용 초과지출 승인 요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심사회를 열어 별지 제17-1호 서식에 따라 심사를 하고, 별지 제17-2호 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한 후 지부장 등에게 별지 제17-3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법률구조비용 초과지출 승인은 심사위원 3인의 찬성으로 하고, 심사위원은 필요한 경우 의뢰자 또는 지부장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부서로 하여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심사위원은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 의뢰자의 소득, 피해의 정도, 소송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자에 대한 법률구조비용 초과지출 승인여부를 심사한다.

⑦법률구조비용 초과지출이 불승인된 때에는 6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승인 이후 동일 의뢰자에 대한 법률구조사건의 법률구조비용 총액이 다시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다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⑧비용심사회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 규정의 예에 따르고, 외부위원에 대하여 소송비용으로 5만원의 심사수당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2. 3. 31.]

부 칙 <2007. 3. 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당시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사건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 5. 23.>

이 지침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31.>

이 지침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9.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범의 개정) 생략

부 칙 <2008. 1. 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당시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사건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 2. 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소송구조결정된 사건의 처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2. 28.>

이 지침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당시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사건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 7. 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지침 제4조 제1항 제2호 차목·제4조 제2항 제6호 및 제5조 제2호 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소송구조결정 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 10. 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 제2항 제5호 단서 중 개정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 중 개정 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소송구조결정 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범의 개정) 생략

부 칙 <2008. 12. 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소송구조결정된 사건의 처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규범의 개정) 생략

부 칙 <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소송구조결정된 사건의 처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규범의 개정) 생략

부 칙 <2009. 9.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민사 등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0. 4. 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당시 가족관계미등록자로서 종전

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여 처리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이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 <2010. 5. 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민사 등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0. 6. 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2. 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중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민사 등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2. 4. 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의 처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2. 5. 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의 처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변경) 제5조 제6호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행하는 이력요약/가입증명서”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행하는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로, 제5조 제9호 아목 “국민연금이력요약/가입증명서”를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로 한다.

부 칙 <2012. 7. 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 제2항 제5호 단서 중 개정 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소송구조결정 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범의 개정) 생략

부 칙 <2012. 12. 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어변경) 제5조 제3호 별지 제1호 서식의, 제5조 제4호 가목 별지 제2호 서식의, 제8조 제2항 별지 제3호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제8조 제5항 별지 제5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생년월일”로 한다.

부 칙 <2013. 1. 22.>

이 지침은 2013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6. 24.>

이 지침은 2013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9. 17.>

이 지침은 2013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26.>

이 지침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3. 31.>

이 지침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5. 29.>

이 지침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6. 10.>

이 지침은 2014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1. 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9호 제마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의 처리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의 처리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5. 2. 24.>

이 지침은 2015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 27.>

이 지침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4. 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소송구조 결정된 사건의 처리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5. 9. 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의 처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5. 10. 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의 처리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의 처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6. 1. 22.>

이 지침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2.>

이 지침은 2016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의 처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6. 4. 29.>

이 지침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호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 5. 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소송구조결정 되는 사건부터 적용하며,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상환한 비용의 처리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 6. 1.>

이 지침은 2016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7. 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소송구조결정 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범의 개정) 생략

부 칙 <2016. 9. 26.>

이 지침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소송구조결정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상환한 비용의 처리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범의 개정) 생략

부 칙 <2017. 3. 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의 처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규범의 개정) 생략

부 칙 <2017. 6. 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범의 개정) 생략

부 칙 <2017. 7. 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범의 개정) 생략

부 칙 <2017. 12. 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범의 개정) 생략

부 칙 <2018. 4. 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민사 등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규범의 개정) 생략

부 칙 <2018. 5. 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규범의 개정) 생략

부 칙 <2018. 6. 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소송구조 결정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범의 개정) 생략

부 칙 <2018. 8. 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하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범의 개정) 생략

부 칙 <2018. 12. 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지침 시행일 당시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사건 및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상환·회수한 소송비용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제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범의 개정) 생략

부 칙(2019. 7.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하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범의 개정) 「법률구조사건처리절차의 간소화·능률화를 위한 개선방안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2019. 9. 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8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지침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하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범의 개정) ①「법률구조사건처리절차의 간소화·능률화를 위한 개선방안관련 업무처리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법률구조사업 실적보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Ⅲ. 무료법률구조사업실적보고. 나. 무료구조대상자별 법률구조사업실적. (19) 장애인 무료법률구조사업실적. 1-6. 민사사건 등 법률구조사건(누계)의 대상자별 분류 장애인 난 “1급~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으로 하고, “4급~6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종전 4~6급)”으로 한다.

부 칙(2020.1.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범의 개정) 「법률구조사건처리절차의 간소화·능률화를 위한 개선방안관련 업무처리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부 칙(2020.6.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 6. 4.부터 시행하되, 2020. 5. 18.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적용일 이전에 소송구조결정된 사건의 처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규범의 개정) ①「법률구조사건처리절차의 간소화·능률화를 위한 개선방안관련 업무처리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법률구조사업 실적보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Ⅲ. 무료법률구조사업실적보고 나. 무료구조대상자별 법률구조사업실적 (16)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장기소액연체자지원 재단법인 지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대상자 무료법률구조사업실적”을 “장기소액연체자지원 재단법인 지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대상자 무료법률구조사업실적”으로 한다.

부 칙(2020.7.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범의 개정) ①「법률구조사건처리절차의 간소화·능률화를 위한 개선방안관련 업무처리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②「법률구조사업 실적보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Ⅰ. (1). 2-2.를 별지 3과 같이 하고, Ⅲ. 가. 1-6.을 별지 4와 같이 하며, Ⅲ. 나. (24)를 별지 5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지침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되, 이 지침에 의하여 개정된 서식은 2020년 8월분 보고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8.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및 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소송구조결정된 소상공인 사건의 처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채무자대리 선임사건(과태료 제재사건포함)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하여 진행한 사건에 대하여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범의 개정) 「법률구조사건처리절차의 간소화·능률화를 위한 개선방안관련 업무처리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부 칙(2020.9.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범의 개정) ①「법률구조사건처리절차의 간소화·능률화를 위한 개선방안관련 업무처리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②「법률구조사업 실적보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Ⅰ. (1). 2-2.를 별지 3과 같이 하고, Ⅲ. 가. 1-6.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지침은 2021년 1월 일부터 시행하되, 이 지침에 의하여 개정된 서식은 2021년 1월분 보고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3.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범의 개정) 「법률구조사업 실적보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Ⅰ. (1). 2-2.를 별지 2와 같이 하고, Ⅲ. 가. 1-6.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지침은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하되, 이 지침에 의하여 개정된 서식은 2021년 3월분 보고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5.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범의 개정) ①「법률구조사건처리절차의 간소화·능률화를 위한 개선방안관련 업무처리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②「법률구조사업 실적보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Ⅰ. (1). 2-2.를 별지 3과 같이 하고, Ⅲ. 가. 1-6.을 별지 4와 같이 하며, Ⅲ. 나. (24)를 별지 5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지침은 2021년 5월 4일부터 시행하되, 이 지침에 의하여 개정된 서식은 2021년 6월분 보고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3. 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범의 개정) ①「법률구조사업 실적보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Ⅰ.(1).2-2. 및 Ⅲ.가.1-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Ⅲ.나.(27) 및 Ⅲ.나.(28)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지침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구조사건처리절차의 간소화·능률화를 위한 개선방안관련 업무처리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2022. 7. 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도시영세민 사건으로 접수되어 상대방상환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이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2022. 9. 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범의 개정) 「법률구조사건처리절차의 간소화·능률화를 위한 개선방안관련 업무처리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2022. 9. 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이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2022. 9. 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범의 개정) ①「법률구조사업 실적보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Ⅰ.(1).2-2. 및 Ⅲ.가.1-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Ⅲ.나.(29), Ⅲ.나.(30)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지침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지침에 의하여 개정된 서식은 2022년 10월분 보고부터 적용한다.

②「법률구조사건처리절차의 간소화·능률화를 위한 개선방안관련 업무처리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범의 개정) 「법률구조사건처리절차의 간소화 · 능률화를 위한 개선방안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2023. 5. 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범의 개정) ①「법률구조사업 실적보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Ⅰ.(1).2-2. 및 Ⅲ.가.1-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Ⅲ.나.(2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Ⅲ.나.(3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지침은 2023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지침에 의하여 개정된 서식은 2023년 4월분 보고부터 적용한다.

②「법률구조사건처리절차의 간소화 · 능률화를 위한 개선방안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2023. 5. 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 2023. 1. 1. 이후 생활보장수급자 등으로 접수된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사건은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자(국민은행)'로 변경하여 상환결정 할 수 있다.

제2조(다른 규범의 개정) ①「법률구조사업 실적보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Ⅰ.(1).2-2. 및 Ⅲ.가.1-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Ⅲ.나.(32)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지침은 202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지침에 의하여 개정된 서식은 2023년 5월분 보고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 6. 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3. 1. 1.이후 다른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접수된 임대차관련 사건으로 전세사기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인 '전세사기피해자'로 변경하여 상환결정을 할 수 있다.

제2조(다른 규범의 개정) ①「법률구조사업 실적보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Ⅰ.(1).2-2. 및 Ⅲ.가.1-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Ⅲ.나.(3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지침은 202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지침에 의하여 개정된 서식은 2023년 6월분 보고부터 적용한다.

②「법률구조사건처리절차의 간소화·능률화를 위한 개선방안관련 업무처리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2023. 6. 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범의 개정) ①「법률구조사건처리절차의 간소화·능률화를 위한 개선방안관련 업무처리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2023. 11. 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범의 개정) ①「법률구조사업 실적보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Ⅰ.(1).2-2. 및 Ⅲ.가.1-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Ⅲ.나.(34)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지침은 202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지침에 의하여 개정된 서식은 2023년 11월분 보고부터 적용한다.

②「법률구조사건처리절차의 간소화·능률화를 위한 개선방안관련 업무처리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2024. 3. 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5. 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범의 개정) ①「법률구조사업 실적보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Ⅰ.(1).2-2. 및 Ⅲ.가.1-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Ⅲ.나.(35)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지침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지침에 의하여 개정된 서식은 2024년 5월분 보고부터 적용한다.

②「법률구조사건처리절차의 간소화·능률화를 위한 개선방안관련 업무처리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2024. 7. 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하여 진행 중

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범의 개정) ①「법률구조사업 실적보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Ⅰ.(1).2-2. 및 Ⅲ.가.1-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Ⅲ.나.(2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Ⅲ.나.(3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지침은 202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지침에 의하여 개정된 서식은 2024년 7월분 보고부터 적용한다.

②「법률구조사건처리절차의 간소화·능률화를 위한 개선방안관련 업무처리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개정 '22. 9. 6.×개정 '22. 9. 7.×개정 '22. 9. 27.×개정 '22. 12. 29.×개정 '23. 5. 8.×개정 '23. 6. 26.×개정 '23. 6. 30.×개정 '23. 11. 14.×개정 '24. 5. 20.×개정 '24. 7. 8.>

법률구조대상자(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0조 관련)

출연기관 등	연번	구조대상자			구조대상사건	기준중위소득제한	증빙서류 (숫자 표기 : 하나 이상 구비 시 대상자임)	범위	가족에 대한 무료
		대분류	중분류	정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	농·어업인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다만, 실제로 그 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규정된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법」 제20조, 제107조에 규정된 준조합원은 제외한다)	제한 없음	150% 이하	1. 시·군·읍·면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및 사무소장이 발급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농업협동조합 발행 회원증명 등	전부 무료	해당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어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다만, 실제로 그 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같은 법 제3조제5호에 규정된 생산자단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1조에 규정된 준조합원 및 「수산업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종사자는 제외한다)	제한 없음	150% 이하	1.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이 발급하는 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산업협동조합 발행 회원증명 등	전부 무료	해당
주식회사 신한은행	3	도시영세민	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한 없음	소명 생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	전부 무료	해당
	4		의사자유족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자유족, 의상자와 그 가족	제한 없음	125% 이하	1. 의사상자 증서 2.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 유족 또는 가족인 경우는 위 증서 또는 통보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	전부 무료	해당
	5		결혼이민자 귀화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한 없음	125% 이하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발행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전부 무료	해당
	6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로 임차보증금 또는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지급받을 수 없음이 예상되는 사람	임대차, 전세계약과 관련한 보증금 반환사건 및 관련한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	125% 이하	임대차 또는 전세계약서, 고소장, 공소장, 관공서 작성의 피해사실증명원,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판결문 등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불이행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임대인에 대한 수사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반환능력이 없는 자에게 소유권 양도, 반환능력 없이 다수 주택을 취득 임대 등)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	전부 무료	해당 없음

출연기관 등	연번	구조대상자			구조대상사건	기준중위소득제한	증빙서류 (숫자 표기 : 하나 이상 구비 시 대상자임)	범위	가족에 대한 무료
		대분류	중분류	정의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7	영세담배소매인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소매인	제한 없음	125% 이하	담배소매인등록지 주식회사 KT&G 지점장 또는 담당 직원이 발행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월평균담배판매금액확인서(담배소매인의 월평균수입은 판매금액의 10%로 추정)	전부 무료	해당
여성가족부	8	가정폭력 피해자 등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자(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다만, 성폭력피해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이버성폭력피해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피해자,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포함한다.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민·가사사건	125% 이하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에 의해 설치된 상담소 또는 시설, 여성가족부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 가정폭력피해여성보호를 위해 설치된 상담소 또는 시설 등에서 확인한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정폭력 · 성폭력)피해상담사실확인원 2. 진단서(가정 · 성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고소장사본 및 고소장접수증명서 4. 기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진술서, 카톡 등 메신저, 녹취록, 사진 등	전부 무료	해당 없음
	9		성폭력 피해자						
	10		한부모가족	취약계층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제한없음(다만, 양육비이행관리원 위탁사건 제외)	소명 생략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한 한부모가족증명서	전부 무료	해당
				한부모가족		125% 이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하는 증인진술서 등		
	11		미혼모 · 부	미혼모 · 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또는 제57조에 따른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이 필요한 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또는 제57조에 따른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사건	125% 이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또는 제57조에 따른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이 필요한 자임을 증명하는 증인진술서	전부 무료	해당 없음

출연기관 등	연번	구조대상자			구조대상사건	기준중위소득제한	증빙서류 (숫자 표기 : 하나 이상 구비 시 대상자임)	범위	가족에 대한 무료
		대분류	중분류	정의					
양육비이행관리원	12	한부모가족(양육및인지)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미혼모·부가족, 기타 한부모가족(재혼가족 포함), 조부모 가족	양육비 및 양육비 심판청구 중 상대방이 제기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사건, 인지청구 및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 허가 청구사건,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모의 후견인선임 청구사건	증명서 있는 경우 소명 생략 그 외 125% 이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한 한부모가족증명서	전부 무료	해당 없음
	13		미혼 모·부가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하는 증인진술서 등		
	14		기타 한부모가족						
	15		조부모 가족				(외)조부모 및 손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조부모가족임을 증명하는 증인진술서		
고용노동부	16	임금등체불피해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다만,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임금 및 퇴직금 관련 민사사건	제한 없음	1.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2. 사업주가 작성한 체불확인서, 지불각서 등(단, 당사자와 체불액 특정이 명백한 경우에 한함)	전부 무료	해당 없음
중소벤처기업부	17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사건 포함) 다만,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 제외.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사건은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6월 이내 신청 사건 포함	125% 이하	1.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 2.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용 사업자등록증, ㉡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상시근로자수를 소명할 서류{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의 경우 5인 미만임을 소명할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증명(국민연금공단),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당해 회사의 임금지급대장 등.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근로자수 소명자료 생략}	전부 무료	해당 없음
						제한없음(연매출 2억원 이하인 자)	위 1호 및 2호 서류 중 택일하고 국세청발행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부가가치세면제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상의 손익계산서 중 하나를 제출한 경우		

출연기관 등	연번	구조대상자			구조대상사건		기준중위소득제한	증빙서류 (숫자 표기 : 하나 이상 구비 시 대상자임)	범위	가족에 대한 무료
		대분류	중분류	정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8	소규모 중소기업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개인(법인 제외)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6월 이내 신청사건 포함)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 단,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과 국가 및 공공기관 상대 민사소송,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제외		125% 이하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	전부 무료	해당 없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19	선원	선원(체불피해)	선원법상의 임금·퇴직금 체불 피해선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선원법상의 임금·퇴직금 체불사건,	다만,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해고나 근로조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과 선박경매 및 선박감수보존 사건제외	제한 없음	해양수산부 발행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체불금품확인원	전부 무료	해당 없음
	20		선원(재해보상)	선원법상의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선원법상의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민사사건			선원소명자료(지방해양항만청에서 발급한 선원수첩, 선원신분증명서, 선박소유자가 발급한 신원보증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등) 및 선원법상 재해보상사고 소명자료(진단서 등)		
	21		선원(125%이하)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승선중인 선원 및 최종 하선일로부터 1년 이내인 실직 선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선박경매 및 선박감수 보존사건 제외		125% 이하	1.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발급한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서 2.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나 지방해양항만청에서 발행한 승무경력증명서 다만, 실직 선원인 경우는 위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서 또는 승무경력증명서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발행한 구직등록필증을 함께 제출	전부 무료	해당

출연기관 등	연번	구조대상자			구조대상사건	기준중위소득제한	증빙서류 (숫자 표기 : 하나 이상 구비 시 대상자임)	범위	가족에 대한 무료
		대분류	중분류	정의					
대법원(사법서비스진흥기금)	22	법률보호 취약계층	소년소녀가장	소년 · 소녀가장	제한 없음	125% 이하	가족관계증명서 등	전부 무료	해당
	23		북한이탈주민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제한 없음	125% 이하	북한이탈주민을 증명하는 증명서	전부 무료	해당
	24		범죄피해자 (재산)	판결문, 공소장, 관공서 작성의 범죄피해사실증명원, 사건처분결과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에 의하여 범죄로 인하여 재산피해를 입었음이 입증되는 피해자 본인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회복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사건 다만, 교통사고로 대물피해만 발생한 사건은 제외	125% 이하	재산범죄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판결문, 공소장, 관공서 작성의 범죄피해사실증명원, 사건처분결과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전부 무료	해당
	25		소액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자	주택임대차보증금 관련 사건	125% 이하	주택임대차계약서	전부 무료	해당
	26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제한 없음	소명 생략	「아동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상담소 또는 시설, 보건복지부 또는 기타 법률에서 보호아동을 위해 설치된 상담소 또는 시설 등에서 보호대상아동임을 확인한 사실확인원	전부 무료	해당
	27		가족관계 미등록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람	제한 없음	125% 이하	시(구), 읍, 면의 장이 발행하는 가족관계등록부부존재증명서 등	전부 무료	해당
	28		개인회생, 파산 · 면책신청자 (사서기금)	개인회생 및 파산 · 면책신청대상자	개인회생 및 파산 · 면책신청사건	125% 이하	개인회생 및 파산 · 면책신청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부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소득증명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전부 무료	해당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29	개인회생신청자(서울보증보험)		개인회생신청대상자 중 부채증명서에 의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채무자임이 확인되는 자로서 [별표 2]에 해당하는 자. 다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 2]의 대상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인회생신청사건	125% 이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발행의 부채증명서와 [별표 2]에 해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 부채증명서만에 의한다.	전부 무료	해당 없음

출연기관 등	연번	구조대상자			구조대상사건	기준중위소득제한	증빙서류 (숫자 표기 : 하나 이상 구비 시 대상자임)	범위	가족에 대한 무료
		대분류	중분류	정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30	개인회생신청자(캠코채무자)		캠코 채무자 중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 자	개인회생신청사건	125% 이하	부채증명서 등[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 또는 관리(위탁관리 포함)하는 채권의 채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 또는 관리채권(한마음, 희망모아 채권 등) 2.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관리채권[국민행복기금 채권(햇살론15, 인수채권 등)]	전부 무료	해당 없음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법인	31	파산·면책신청대상자(장기소액연체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장기소액연체자[부채증명서 등에 의하여 금융기관(금융회사, 공공기관, 대부업체 포함) 별 원금 잔액이 합산하여 1천만 원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 10년이 경과된 채무를 1건 이상 보유한 사실이 인정되는 채무자]	파산 · 면책신청사건	125% 이하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 2. 장기소액연체자임을 소명하는 부채증명서 또는 재단으로부터 파산 · 면책 안내문자 수령자	전부 무료	해당 없음
국가보훈처	32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수급권자	제한 없음	125% 이하	1.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2. 국가유공자(유족)증	전부 무료	해당
	33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수급권자 및 개정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29호)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지원대상자 또는 그 수급권자	제한 없음	125% 이하	1.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2.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3. 보훈보상지원대상자(유족)확인원	전부 무료	해당
	34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수급권자	제한 없음	125% 이하	1.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2. 독립유공자(유족)증	전부 무료	해당
	35		5 · 18민주유공자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5 · 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수급권자	제한 없음	125% 이하	1. 5 · 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2. 5 · 18민주유공자(유족)증	전부 무료	해당
	36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제한 없음	125% 이하	참전유공자증	전부 무료	해당

출연기관 등	연번	구조대상자			구조대상사건	기준중위소득제한	증빙서류 (숫자 표기 : 하나 이상 구비 시 대상자임)	범위	가족에 대한 무료
		대분류	중분류	정의					
	37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제한 없음	125% 이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확인원	전부 무료	해당
	38		특수임무수행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수급권자	제한 없음	125% 이하	1. 특수임무유공자(유족) 확인원 2.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전부 무료	해당
	39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단, 동법 제18조의2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제한 없음	125% 이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	전부 무료	해당 없음
주식회사 국민은행	40	학교폭력 피해자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2조의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사건	125% 이하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진단서, 판결문, 공소장, 관공서 작성의 범죄피해사실증명원, 사건처분결과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전부 무료	해당 없음
	41	외국인		국내거주 외국인	체불임금 등 피해 사건을 제외한 민·가사, 노동·산재 관련 행정 사건	125% 이하	국내 거주 외국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 등	전부 무료	해당 없음
	42	경찰·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임용된 경찰공무원(해양경찰을 포함한다) 및 소방공무원법 제5조에 따라 임용된 소방공무원	제한 없음	125% 이하	경찰·소방공무원임을 소명할 수 있는 1. 재직증명서 2. 공무원증	전부 무료	해당 없음
	43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자(국민은행)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대상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사건	125% 이하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부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소득증명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전부 무료	해당 없음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	44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예술인	예술인권리보장법 상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사건	125% 이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행한「예술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서」	전부 무료	해당 없음

출연기관 등	연번	구조대상자			구조대상사건	기준중위소득제한	증빙서류 (숫자 표기 : 하나 이상 구비 시 대상자임)	범위	가족에 대한 무료
		대분류	중분류	정의					
KDB산업은행	45	청년미취업자 및 대학생	청년미취업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본문의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미취업자	체불임금 등 피해 사건을 제외한 민·가사, 행정, 헌법소원 사건	125% 이하	1.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부 무료	해당 없음
	46		대학생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부터 제5호(사이버대학 제외) 각 호 대학(대학원 제외)의 재학생 및 휴학생			1. 재학증명서 2. 휴학증명서		
법무부	47	범죄피해자(신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동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 판결문, 공소장, 관공서 작성의 범죄피해사실증명원, 사건처분결과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에 의하여 범죄로 인하여 생명·신체피해를 입었음이 입증되는 피해자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회복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사건	125% 이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동조 제2항에 해당하는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판결문, 공소장, 관공서 작성의 범죄피해사실증명원, 사건처분결과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전부 무료	해당
보건복지부	48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종전 1-3급)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제한 없음	125% 이하	1. 복지카드 2.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장애인증명서	전부 무료	해당
	49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종전 4-6급)					전부 무료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50	전시납북자가족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시납북자가족(납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으로 결정한 자	전시납북자를 사건본인으로 하는 실종선고심판청구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건	125% 이하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가 발행한 납북자결정통지서 등 전시납북자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부 무료	해당 없음

출연기관 등	연번	구조대상자			구조대상사건	기준중위소득제한	증빙서류 (숫자 표기 : 하나 이상 구비 시 대상자임)	범위	가족에 대한 무료
		대분류	중분류	정의					
재단법인 에스티엑스 복지재단	51	저소득 재해근로자 등(영남)		영남지방 소재 사업장에 소속된 저소득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및 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최초 요양 급여 신청 또는 유족급여 신청이 불승인 된 경우 : 불승인 사건과 관련된 행정사건 최초 요양급여 신청 또는 유족급여 신청이 승인결정(불승인 결정이 취소된 경우 포함)된 경우 : 체불임금 등 피해사건을 제외한 민·가사, 행정, 헌법소원 사건	125% 이하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영남지방 소재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발행한 부지급 또는 불승인 통보서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심사결정서, 재심사결정서 3. 행정심판법 제46조에 의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발행한 재결서 등 위 시행령에 따른 1.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2.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등	전부 무료	해당
GS칼텍스 주식회사	52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교통사고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사상(死傷)하거나 재물이 손괴(損壞)됨으로써 발생된 피해사건 다만,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구조대상사건은 제한 없음	125% 이하	1. 교통안전공단이 발급하는 지원내역증명서(이 는 제5조에 의한 소득 소명자료에 갈음한다) 2.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판결문, 공소장,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안전공단 피해지원대상자는 다른 소명자료 생략)	전부 무료	해당 없음
지원금 (공단)	53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제한 없음	소명 생략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2. 특정 급여자격 확인서	전부 무료	해당 없음

출연기관 등	연번	구조대상자			구조대상사건	기준중위소득제한	증빙서류 (숫자 표기 : 하나 이상 구비 시 대상자임)	범위	가족에 대한 무료
		대분류	중분류	정의					
금융위원회	54	불법사금융피해자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건의 채무자)		채권추심자가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인 채무자 및 관계인	채무자대리인 선임사건 과태료제재사건	제한 없음	1. 금융감독원, 지방자체단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발행의 '불법사금융피해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불법사금융피해상담내역서' 2. 불법사금융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금전차용 관련서류[차용증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대부약정서 등, 변제 관련서류(영수증, 송금증 등), 피해소명서류(공소장, 판결문 등),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전부 무료	해당 없음
					파생사건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시행규정 제46조의2 후단)	125% 이하			
				채권추심자가 등록대부업자 또는 등록대부중개업자이고 최고금리위반 또는 불법추심 등 피해를 입은 채무자 및 관계인	채무자대리인 선임사건 과태료제재사건	제한 없음			
					파생사건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시행규정 제46조의2 후단)	125% 이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55	의료사고피해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 법률구조연계지원대상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정과정에서 의료행위 등에 과실 및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명되었음에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된 사건	125% 이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발급한 '의료사고 법률구조연계 지원대상자 확인서'	전부 무료	해당 없음

출연기관 등	연번	구조대상자			구조대상사건	기준중위소득제한	증빙서류 (숫자 표기 : 하나 이상 구비 시 대상자임)	범위	가족에 대한 무료
		대분류	중분류	정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6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피해자 및 그 유족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및 그 유족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민사사건(단, 국가 및 기술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상대 민사소송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제외)	제한 없음	환경부장관이 발급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	전부 무료	해당 (단, 동 지침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함)
지원금 (공단)	57	집단피해자 등 공익소송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2인 이상인 사건, 반복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회·경제적 약자의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으로 「공익소송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공익소송승인을 받은 자	「공익소송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공익소송승인을 받은 사건	125% 이하	고소장사본, 판결문, 공소장, 관공서 작성의 범죄피해사실 증명원,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증인진술서 등	전부 무료	해당 없음
지원금 (공단)	58	플랫폼종사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배달대행·퀵서비스·대리운전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사람(택배기사와 택시기사는 제외)	플랫폼 노무제공 관련 민사사건(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및 행정사건, 헌법소원사건, 개인회생·파산신청사건	125% 이하	배달·퀵서비스·대리운전 등 일감 처리 내역, 수수료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플랫폼 애플리케이션 화면 출력물) 또는 계약서, 가입비 납부내역, 보수 입금내역 등	전부 무료	해당 없음
주식회사 코빗	59	가상자산투자피해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거래, 투자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	가상자산의 투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투자 실패로 인한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사건	125% 이하	가상자산의 거래, 투자 등 관련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판결문, 공소장, 관공서 작성의 범죄피해사실 증명원, 사건처분결과통지서, 기타 가상자산 투자실패를 소명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 등 서류	전부 무료	해당 없음

출연기관 등	연번	구조대상자			구조대상사건	기준중위소득제한	증빙서류 (숫자 표기 : 하나 이상 구비 시 대상자임)	범위	가족에 대한 무료
		대분류	중분류	정의					
하나금융나눔재단	60	저소득 재해근로자등(전국)		저소득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및 그 가족과 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최초 요양 급여 신청 또는 유족급여 신청이 불승인 된 경우 : 불승인 사건과 관련된 행정사건 최초 요양급여 신청 또는 유족급여 신청이 승인결정(불승인 결정이 취소된 경우 포함)된 경우 : 체불임금 등 피해 사건을 제외한 민·가사, 행정, 헌법소원 사건	125% 이하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부지급 또는 불승인 통보서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심사결정서, 재심사결정서 3. 행정심판법 제46조에 의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발행한 재결서 등 위 시행령에 따른 1.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2.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등	전부 무료	해당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61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발생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 관련 민사사건	125% 이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판결문, 공소장, 관공서 작성의 범죄피해사실증명원, 사건처분결과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전부 무료	비해당
화물복지재단	62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고 유가보조금 내역이 있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화물운송업무와 관련된 민사사건	125% 이하	화물복지재단 발급 접수번호가 기재된 접수확인 문자 [단, 화물복지재단의 구조대상자 증빙서류는 접수확인 문자의 접수번호를 전산통계프로그램(klac)에 입력함으로써 갈음한다]	전부 무료	비해당
지원금(공단)	63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피해구제 관련 민사사건(단, 국가 및 공공기관 상대 민사소송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제외)	제한 없음	고소장사본, 판결문, 공소장,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증인진술서 등 * (공단 내부) 법무부의 지원 요청 공문에 근거하여 「공익소송 사건처리 지침」에 따른 공익소송으로 처리	전부 무료	해당

[별표 2] <신설 '12. 4. 6.><개정 '18. 12. 28.>

사회소외계층의 범위

명 칭	요 건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 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자
70세 이상 자	신청일 현재 70세 이상 고령인 자
고엽제 피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군복무자	현역입영자(직업군인제외)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급권자
노숙자	노숙자 보호 시설 입소자
다자녀 부양자	신청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를 3명 이상 부양하는 자
미성년자	신청일 현재 기준 미성년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사망자	사망자명의 채무를 상속인 또는 채무관련 변제의무자가 변제
상이등급판정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실종자	실종자의 채무를 상속인 또는 채무관련 변제의무자가 변제
여성가족부	「성매매방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탈성매매여성
이재민	주택 침수 피해자 및 이재민
장기입원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입원기간 6개월 이상인자(비연속 포함)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1급~6급의 장애인
장애인부양자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자
한부모가족	부자가족(또는 모자가족)으로「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한부모가족으로 인정한 자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12. 12. 10.>

월 평 균 담 배 판 매 금 액 확 인 서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 주 소			

상기인은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로서 월평균담배판매금액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함

- 아 래 -

연 월	판매금액	연 월	판매금액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월평균판매금액	

※ 수입금액은 판매금액의 10%로 추정함

20 년 월 일

확 인 자 :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지점(사)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사업장주소 :

전화번호 :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12. 12. 10.>

(가정폭력 · 성폭력)피해상담사실확인서

<table>
<tr><td rowspan="2">피 해 자
인적사항</td><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가 해 자
인적사항</td><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피해내용</td><td colspan="4"></td></tr>
<tr><td>입증방법</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5">상기 ○ ○ ○는(은)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자로 상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 인 인
사무소명칭
소 재 지
전화번호</td></tr>
</table>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3호 서식]<개정 '07. 8. 31><개정 '12. 12. 10.>

위 임 장

위임을 받을 사람	성 명 (한 자)	( )	생년월일	
	의뢰자와의 관 계		전 화 번 호	
	주 소			

의뢰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신청하는 청구사건에 대하여 아래 기재된 내용의 권한을 농협(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인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아 래

※ 위임할 사항은 □에 V표시를 하고 위임하지 아니할 사항은 두 줄을 긋고 날인 하십시오

□ 법률구조신청서 접수 및 취하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개인정보 열람 · 출력에 대한 동의

□ 법률구조계약 체결

※ 공단에서 의뢰자 본인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석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의뢰자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12. 12. 10.>

진 술 서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본인은 ○ ○ ○을 상대방으로 한 법률구조신청사건에 대하여 20 . . .

농업(수산업)협동조합 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20 . .

의뢰자 (인)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12. 12. 10.>

진 술 서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본인은 ○ ○ ○ 을 상대방으로 한 법률구조신청사건에 대한 소송결과를 가정폭력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준 ( )에 통지해 주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 민 · 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 . . .

의뢰자 (인)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6호 서식]<개정'07. 5. 23><개정'08. 10. 8><개정'09. 1. 30><개정'09. 7. 13><개정'15.9.23><개정'15.12.30>
<개정'16. 12. 29.><개정'18. 4. 4.><개정'21. 5. 4.><개정'21. 5. 4.><개정'22. 3. 31.>

(전면)

무 료 법 률 구 조 계 약 서

의뢰자를 "갑",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수임의 범위

가. 갑은 을에게 아래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사건구분	사건번호	사건명	계약일자	확 인

나. 을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선정하여 위 사건의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고, 갑은 을이 선정한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게 별도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위임장에 기재한 자격과 권한을 수여한다.

2. 성실의무 등

가. 을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나. 갑은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협조(을의 요구에 따른 자료 제출, 조회 회신 등)를 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 등

가. 소송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갑이 소송비용 등을 을에게 즉시 상환한다.

(1) 확정판결, 화해 등으로 소송이 종료한 법률구조사건 중 세대를 기준으로 승소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은 제외) : 을이 부담한 소송비용과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변호사보수

(2) 의뢰자가 지침 제10조제1항 각호의 소송비용 부담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인 경우 : 을이 부담한 소송비용

(3)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의 경우 : 개인기준 승소가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가액에 해당하는 인지대 및 변호사 보수

(4) 가정폭력 피해자등의 경우 : 보전사건을 제외한 법률구조비용 총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00만원 초과하는 법률구조비용(단, 법률구조 비용승인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

나. 을은 의뢰사건이 규칙에서 정한 예납유예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으로부터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소송비용을 예납받을 수 있다.

다. 을이 소송비용을 부담한 법률구조사건이 확정판결, 화해 등으로 소송이 종료한 때에는 갑은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상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상환한 소송비용은 즉시 을에게 상환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임의변제를 하지 않을 때에는 갑은 을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위임장 제출, 사실관계 확인 등 을이 요구하는 사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을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은 위 사건의 소송수행에 필요한 비용 범위 내이며, 패소시 의뢰자인 갑이 부담하게 되는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님.

4. 상소심 등 구조절차

갑이 상소심 사건 등의 구조를 원할 때에는 별도로 상소심 사건 등에 대한 법률구조 신청서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서면에 의한 소송구조결정이 있어야 구조를 받을 수 있다.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6호 서식]<개정07. 5. 23><개정 '08. 2. 4> <개정 '09. 7. 13><개정 '13. 9. 1.><개정 '15.12.30.>

(후면)

5. 구조중단
 가.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을은 갑에 대한 법률구조를 중단할 수 있다.
  (1) 을에 대하여 위임자로서 배신적인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결
  (2) 갑이 구조대상자가 아님이 밝혀지는 등 법률구조의 사유가 없음이 판명된 때
  (3) 갑이 법률구조계약을 위반한 때
  (4) 갑이 수임변호사의 소송수행에 필요한 협조요청에 불응한 때
  (5) 기타 사정변경으로 구조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게 된 때
  (6) 갑이 소송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나. 을이 위 가항에 의하여 구조중단결정을 한 때에는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신청서 주소지로 우편발송함으로써 구조중단의 효력은 발생한다.
 다. 구조중단이 되면 을의 갑에 대한 위임사무는 종료되며, 소송진행 중인 때에는 수임변호사는 구조중단 즉시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한다.

6. 자료의 유치 및 폐기
 을은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소송기록 등을 기록물관리규칙이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폐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갑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기 타
 사건처리에 관하여 이 계약서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률구조사건처리에 관한 제규범에 따르고 적용규정이 없으면 을이 최종 결정한다.

20 . . .

갑 : 의뢰자 성명 (인)
 주소

을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리인 ○○지부(○○출장소○○지소)장 (인)

유의사항 : 을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갑에게 휴대전화, 전자우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연락 또는 통지한다. 갑은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을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을은 갑이 신청·고지한 연락처로 연락·통지하였으나 송달불능, 통화불능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07. 5. 23><개정 '08. 10. 8><개정 '09. 1. 30><개정 '09. 7. 13><개정 '15.9.23.><개정 '15.12.30.>
<개정 '16. 12. 29.><개정'21. 5. 4.><개정'22. 3. 31.> (전면)

무 료 법 률 구 조 계 약 서

의뢰자를 "갑", 법률구조위원을 "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병"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수임의 범위

가. 갑은 을에게 아래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사건구분	사건번호	사건명	계약일자	확 인

나. 갑은 을에게 교부하는 위임장 또는 선임서에 기재한 자격과 권한을 수여한다.

2. 성실의무 등

가. 을은 갑과 병의 진의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만일 을이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해태하는 등 수임변호사 로서 부적임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병은 임의로 을을 해임할 수 있다.

나. 갑은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협조(을의 요구에 따른 자료제출, 조회 회신 등)를 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 등

가. 소송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병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갑이 소송비용 등을 병에게 즉시 상환한다.

(1) 확정판결, 화해 등으로 소송이 종료한 법률구조사건 중 세대를 기준으로 승소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은 제외) : 병이 부담한 소송비용과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변호사보수

(2) 의뢰자가 지침 제10조제1항 각호의 소송비용 부담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인 경우 : 병이 부담한 소송비용

(3)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의 경우 : 개인기준 승소가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가액에 해당하는 인지대 및 변호사 보수

(4) 가정폭력 피해자등의 경우 : 보전사건을 제외한 법률구조비용 총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00만원 초과하는 법률구조비용(단, 법률구조 비용승인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

나. 병은 의뢰사건이 규칙에서 정한 예납유예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으로부터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소송비용을 예납받을 수 있다.

다. 병이 소송비용을 부담한 법률구조사건이 확정판결, 화해 등으로 소송이 종료 되었을 때에는 갑은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등을 상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상환한 소송비용 등은 즉시 병에게 상환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임의변제를 하지 않을 때에는 갑은 병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위임장 제출, 사실관계 확인 등 병이 요구하는 사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라. 갑과 을은 소송비용 지급방법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동의한다.

(1) 병은 갑을 대신하여 을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2) 병은 갑을 대신하여 을에게 변호사보수를 지급하며, 변호사보수는 각 심급 별·사건별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누어 산정·지급한다.

(3) 착수금은 구조결정가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는 승소가액을 기준으로 규칙 별표2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4) 구조결정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6조, 제27조 및 민사소송등인지규칙에서 정한 소가산정방법을 준용하며, 승소가액 및 성공보수의 산정에 관하여는 규칙 제30조, 제30조의2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마. 을은 소송수행 중 비용이 부족할 때에는 병에게 부족한 비용의 추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병은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을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청구취지가 확장된 때에는 을은 병에게 착수금의 추가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취지가 감축된 때에는 병은 을에게 일부 착수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을과 병은 소송종료시까지 그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별지 제7호 서식]<개정 '07. 5. 23><개정 '08. 2. 4><개정 '09. 7. 13><개정 '13. 9. 1.><개정 '15. 12. 30.><개정'18. 4. 4.><개정 '24. 7. 8.>

(후면)

바. 을은 갑의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등에 대하여 임의이행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받아야 하고, 갑이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임의이행을 받기로 약정하는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이 수령하도록 하여야 하며, 을은 이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한 때에는 이를 갑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즉시 그 전액을 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병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은 위 사건의 소송수행에 필요한 비용 범위 내이며, 패소시 의뢰자인 갑이 부담하게 되는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님.

4. 상소심 등 구조절차

갑이 상소심 사건 등의 구조를 원할 때에는 별도로 상소심 사건 등에 대한 법률구조신 청서를 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서면에 의한 소송구조결정이 있어야 구조를 받을 수 있다.

5. 구조중단

가.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병은 갑에 대한 법률구조를 중단할 수 있다.

(1) 을에 대하여 위임자로서 배신적인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결
(2) 갑이 구조대상자가 아님이 밝혀지는 등 법률구조의 사유가 없음이 판명된 때
(3) 갑이 법률구조계약을 위반한 때
(4) 갑이 수임변호사의 소송수행에 필요한 협조요청에 불응한 때
(5) 기타 사정변경으로 구조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게 된 때
(6) 갑이 소송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나. 병이 위 가항에 의하여 구조중단결정을 한 때에는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이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신청서 주소지로 우편발송함으로써 구조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 구조중단이 되면 을의 갑에 대한 위임사무는 종료되며, 소송진행 중인 때에는 수임변호사는 구조중단 즉시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한다.

6. 자료의 유치 및 폐기

가. 병은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판결문 등을 유치할 수 있다.

나. 병은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소송기록 등을 기록물관리규칙이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폐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갑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병은 인공지능 법률지원서비스, 사례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수임변호사가 위임사무에 따라 작성한 소장, 준비서면 등 법률서면과 판결문(결정문)을 개인에 관한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여 내부 활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7. 기 타

사건처리에 관하여 이 계약서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률구조사건처리에 관한 제 규범에 따르고 적용규정이 없으면 병이 최종 결정한다.

20 . . .

갑 : 의뢰자 성명 (인)
주소

을 : 법률구조위원 수임변호사 성명 (인)
주소

병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리인 ○○지부(○○출장소○○지소)장 (인)

유의사항 : 을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갑에게 휴대전화, 전자우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연락 또는 통지한다. 갑은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을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을은 갑이 신청·고지한 연락처로 연락·통지하였으나 송달불능, 통화불능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을과 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8호 서식]<개정 '07. 5. 23><개정 '09. 7. 13><개정'18. 4. 4.>

무 료 법 률 구 조 계 약 서

의뢰자를 "갑",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소장등서류작성구조결정된 갑의 임금·퇴직금청구사건에 대하여 을은 소장 등 서류를 작성하여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갑의 소송진행에 필요한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소장을 접수한 갑이 법원사건번호와 법원에 납부한 비용의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을이 소송비용을 부담한 법률구조사건이 확정판결, 화해 등으로 소송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갑은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상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상환한 소송비용은 즉시 을에게 상환하고, 상대방이 임의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을이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위임장 제출, 사실관계 확인, 갑 명의의 소송비용 변제최고 통지, 채권양도 통지 등 을이 요구하는 사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4. 갑의 소송비용을 을이 부담한 후 갑이 고의로 소송을 종결한 경우에는 그동안 을이 갑을 위하여 부담한 소송비용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5. 사건처리에 관하여 이 계약서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 규정에 따른다.

※ 을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은 위 사건의 소송수행에 필요한 비용 범위 내이며, 패소시 의뢰자인 갑이 부담하게 되는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님.

20 . . .

갑 : 의뢰자 성명 (인)

주소 :

을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위 대리인 ○○지부(○○출장소○○지소)장 (인)

210㎜×297㎜(모조지70g/㎡)

[별지 제9호 서식]<개정 '09. 7. 13>

안 내 서

귀하께서 신청하신 체불임금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오늘 받으신 소송서류는 법원에 직접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시 법원에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신 후 납부한 영수증을 가지고 오셔서 그 금액을 공단에서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원 사건번호를 공단의 사건담당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사건의 소송 진행 중 법원으로부터 어떤 서류를 받거나 기타 궁금한 점이 있을 때에는 즉시 아래에 적혀 있는 공단의 사건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고, 재판이 끝난 경우에는 즉시 사건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공단이 부담한 소송비용의 회수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법률구조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 건 담 당 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
홍 길 동 (전화 :)

.

210㎜×297㎜(모조지70g/㎡)

[별지 제10호 서식]<개정 '09. 7. 13><개정 '17. 6. 7.>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

(전화 :)

문서번호 20 . . .

수 신

제 목 소송비용에 대한 변제최고

1. 당 공단이 의뢰자 로부터 위임을 받아 패소자인 귀하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법원 사건의 판결에 소요된 소송비용 금 원을 20 . . 까지 아래 사항에 따라 조속히 변제하여 줄 것을 통지합니다.

2. 만약, 위 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부득이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예 금 주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

입금은행 :

계좌번호 :

※ 무통장 입금 후에는 반드시 입금사실여부를 통보하여 주십시오.

연락전화번호 : 담당자 :

※ 귀하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채무초과 등 비용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급자증명서' 또는 '과세실적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가 가능하오니 위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장 (인)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11호 서식]<개정 '09. 7. 13>

소송비용에 대한 변제 최고서

수 신 :
주 소 :

본인이 귀하를 상대로 소 제기한 ○○ 지방법원 ○○ 지원 임금·퇴직금청구사건의 판결에 소요된 소송비용 금 원을 20 . . . 까지 아래 사항에 따라 조속히 변제하여 줄 것을 통지합니다.

만약, 위 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부득이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음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등 추가 절차를 밟는 경우 귀하의 부담액이 가중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예 금 주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
입금은행 :
계좌번호 :
(연락전화번호 : 담당자 :)

20 . . .

통지인 의 뢰 자 (인)
주 소 :

210㎜×297㎜(모조지70g/㎡)

[별지 제12호 서식]<개정 '09. 7. 13>

채 권 양 도 통 지 서

수 신 : ○ ○ ○

주 소 :

제 목 : 채권양도통지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사실을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귀하에게 통지합니다.

- 다 음 -

1. 채권의 내용

채권자 :

채무자 :

○○ 지방법원 ○○ 지원 임금·퇴직금청구사건의 판결에 소요된 소송비용

금 원 (소송비용확정결정액 금 원)의 청구채권

2. 채권양도일 및 채권양수인

채권양수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부(○○출장소○○지소)

주 소 :

채권양도일 : 년 월 일

3. 위와 같이 채권자는 귀하에 대한 위 채권을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부(○○ 출장소○○ 지소)에 양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 . .

통지인(채권자) ○ ○ ○ (인)

210㎜×297㎜(모조지70g/㎡)

[별지 제13호 서식]<개정 '09. 7. 13>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

(전화 :)

문서번호 20 . . .

수 신

제 목 소송비용에 대한 변제최고

1. 의뢰자 이(가) 귀하를 상대로 제기한 ○○ 지방법원 ○○지원 임금·퇴직금청구사건의 판결에 소요된 소송비용 금 원 (소송비용확정결정액 금 원)에 대하여 우리 공단에 20 . . 일자로 채권양도 되었으니, 위 금원을 20 . . . 까지 아래 사항에 따라 조속히 변제하여 줄 것을 통지합니다.

2. 만약, 위 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부득이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예 금 주 :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부(○○ 출장소○○지소)

입금은행 :

계좌번호 :

※ 무통장 입금 후에는 반드시 입금사실여부를 통보하여 주십시오.

연락전화번호 : 담당자 :

210㎜×297㎜(모조지70g/㎡)

[별지 제14호 서식].<개정 '10. 6. 29.>

소 송 비 용 상 대 방 상 환 및 법 원 회 수 현 황 보 고 서

순번	사건번호	당 사 자		상대방상환 및 법원회수현황												비 고
		의뢰자	상대방	발생총계		상대방상환 및 법원회수						상대방상환 진행중		상대방상환 및법원회수 불가능		
						소 계		법원회수		상대방상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당 월 분																
누 계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15호 서식].<개정 '10. 6. 29.>

소송비용상환 및 상대방상환불가결정서

결재				

사건번호		소구번호	
의뢰자		사건명	
직업		법원사건번호	

위 (　　)법률구조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액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소송비용상환결정하고, 이 사건의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은 상환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소송비용상환결정	항목		금액	비고
	소송비용	본안비용		
		보전비용		
		집행비용		
		기타비용		
		소계		
	변호사보수			
	합계			
	변호사보수 산정내역			협조: 수임변호사

소송비용상대방상환불가결정	항목	금액	상대방상환불가사유	비고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계			

210mm×297mm(모조지70g/㎡)

[별지 제15-1호 서식]<신설 17. 12. 13.>

소송비용계산 및 상대방상환불가결정서

결재				

사건번호		소구번호	
의뢰자		사건명	
직업		법원사건번호	

위 법률구조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이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상환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소송비용계산	항목		금액	비고
	소송비용	본안비용		
		보전비용		
		집행비용		
		기타비용		
		소계		
	변호사보수			
	합계			
	변호사보수 산정내역			협조: 수임변호사

소송비용 상대방 상환 불가 결정	항목	금액	상대방상환불가사유	비고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계			

210mm×297mm(모조지70g/㎡)

[별지 제16호 서식]<개정 '10. 6. 29.><개정 '12. 12. 10.><개정 '13. 1. 22.>

소 송 비 용 상 대 방 상 환 불 가 결 정 서

결재				

사건번호 (소구번호)	당사자		상환결정액		상대방상환 및 법원회수액		상대방 상환불가액		상대방상환 불가결정대상액			상대방상환 불가사유 (근거)	무료 대상자 유형
	의뢰자	상대방	소송 비용	변호사 보수 비용	소송 비용	변호사 보수 비용	소송 비용	변호사 보수 비용	소송 비용	변호사 보수 비용	소계		
합 계													

※ 상대방 상환불가사유(근거)는 무료법률구조사업시행지침 해당 조항을 표시하거나 별지 추가 기재 가능

○ 결 정

- 일 자 : 20 . . .
- 주 문 : 위 사건의 각 기재 상대방상환불가결정대상액은 상환하지 아니한다.

297㎜×210㎜(모조지 70g/㎡)

[별지 제16-1호 서식]<신설 '08. 7. 2>.<개정 '10. 6. 29.><개정 '12. 12. 10.><개정 '13. 1. 22.>

소 송 비 용 상 대 방 상 환 불 가 결 정 서

결재				

사건번호 (소구번호)	당사자		상환결정액		상대방상환 및 법원회수액		상대방상환불가액		상대방상환불가결정대상액			무료대상자유형
	의뢰자	상대방	소송비용	변 호 사 보수비용	소송비용	변 호 사 보수비용	소송비용	변 호 사 보수비용	소송비용	변 호 사 보수비용	소 계	
합 계												

○ 결 정

- 상대방상환불가사유 :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 제13조 제2항 제1호(소송비용 상대방미상환금액이 20만원 이하)
- 일 자 : 20 . . .
- 주 문 : 위 사건의 각 기재 상대방상환불가결정대상액은 상환하지 아니한다.

297㎜×210㎜(모조지 70g/㎡)

[별지 제17호 서식]<개정 '08. 7. 28.><삭제 '10. 5. 19.><신설 '22. 3. 31.>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전화 :)

문서번호 20 . . .

수 신 법률구조 비용승인 심사위원회 위원장

경 유

제 목 법률구조비용 초과지출 승인 요청서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건에 관한 법률구조비용의 초과지출에 대한 승인을 요청합니다.

사 건 번 호		소 구 번 호	
의 뢰 자		사 건 명	
대 상 자		법원사건번호	
사 건 개 요			

지출한 법률구조비용	사건번호 (소구번호)	소송비용	변호사보수비용	지출액
	21민가1987			
	합계			
지출예정 법률구조비용	사건번호	소송비용	변호사보수비용	지출예정액
	21민가1990	*예상비용기재*	*예상비용기재*	
	합계			

조사담당변호사 또는 수임변호사 의견	법률구조비용 초과지출 승인에 대한 의견(법률구조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 법률구조비용 초과지출이 필요한 사유 등) *별지사용 가능*
첨부서류	법률구조신청서, 구조대상자 소명자료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장 (인)

[별지 제17-1호 서식]<신설 '22. 3. 31.>

법률구조비용 초과지출 승인 심사표

구분	심사기준	판정(√)
구조의 타당성	○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시행규정 제7조의 구조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등 검토	①적합( ) ②부적합( )
승소가능성	○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청구금액이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한지 등 여부	①적정( ) ②부적정( )
집행가능성	○ 승소 후 집행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의뢰자가 판결만 받기를 원하는 경우 판단불요	①있음( ) ②없음( ) ③판단불요( )
소득 등	○ 의뢰자의 소득, 피해정도, 소송비용 등에 비추어 초과지출필요성	①있음( ) ②없음( )
종합의견	*(예시) 사건개요 및 조사담당변호사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의뢰자에 대한 법률구조는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시행규정 제7조에 위반하지 않고, 의뢰자의 소득, 피해정도, 의뢰자를 위한 법률구조 절차 진행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뢰자에 대한 소송비용의 초과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초과지출 심사의견	**승 인( )**	
	·미승인( )	

20 . . .

심사위원 : **(인)**

297㎜×210㎜(모조지 70g/㎡)

[별지 제17-2호 서식]<신설 '22. 3. 31.>

법률구조비용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1. 사　　건 : 00지부 2021민가000호(의뢰자 ○○○)

2. 심사의견

구　분	직　위	성　명	승인/불승인
위 원 장	구조국장	○ ○ ○	
위　　원	상임위원	○ ○ ○	
	위　　원	○ ○ ○	
	위　　원	○ ○ ○	

3. 위 심사의견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한 법률구조비용의 초과지출을 승인/불승인 함

※ 첨 부 : 심사위원 심사표 각 1부

20　.　.　.

법률구조 비용승인 심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297㎜×210㎜(모조지 70g/㎡)

[별지 제17-3호 서식]<신설 '22. 3. 31.>

법률구조비용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지

문서번호 20 . . .

수 신 ○○지부(출장소, 지소)장

경 유

제 목 법률구조비용 초과지출 심사결과

아래 사건에 관한 법률구조비용 초과지출 승인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사건번호		소구번호	
의뢰자		사건명	
직업		법원사건번호	
심사결과	**법률구조비용 추가지출을 승인한다(승인하지 아니한다).**		
이유			

법률구조 비용승인 심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18호 서식]<신설 '17. 12. 13.>

소 송 비 용 계 산 서

결재				

사 건 번 호		소 구 번 호	
의 뢰 자		사 건 명	
직 업		법원사건번호	

위 법률구조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항 목		금 액	비 고
소송비용	본 안 비 용		
	보 전 비 용		
	집 행 비 용		
	기 타 비 용		
	소 계		
변호사보수			
합 계			

변호사보수 산정내역		협조	수임변호사

년 월 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장 (인)